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

2022. 6. 16.

한국인터넷진흥원 박경식



1. 들어가며

1 핵심 키워드 3가지



사전동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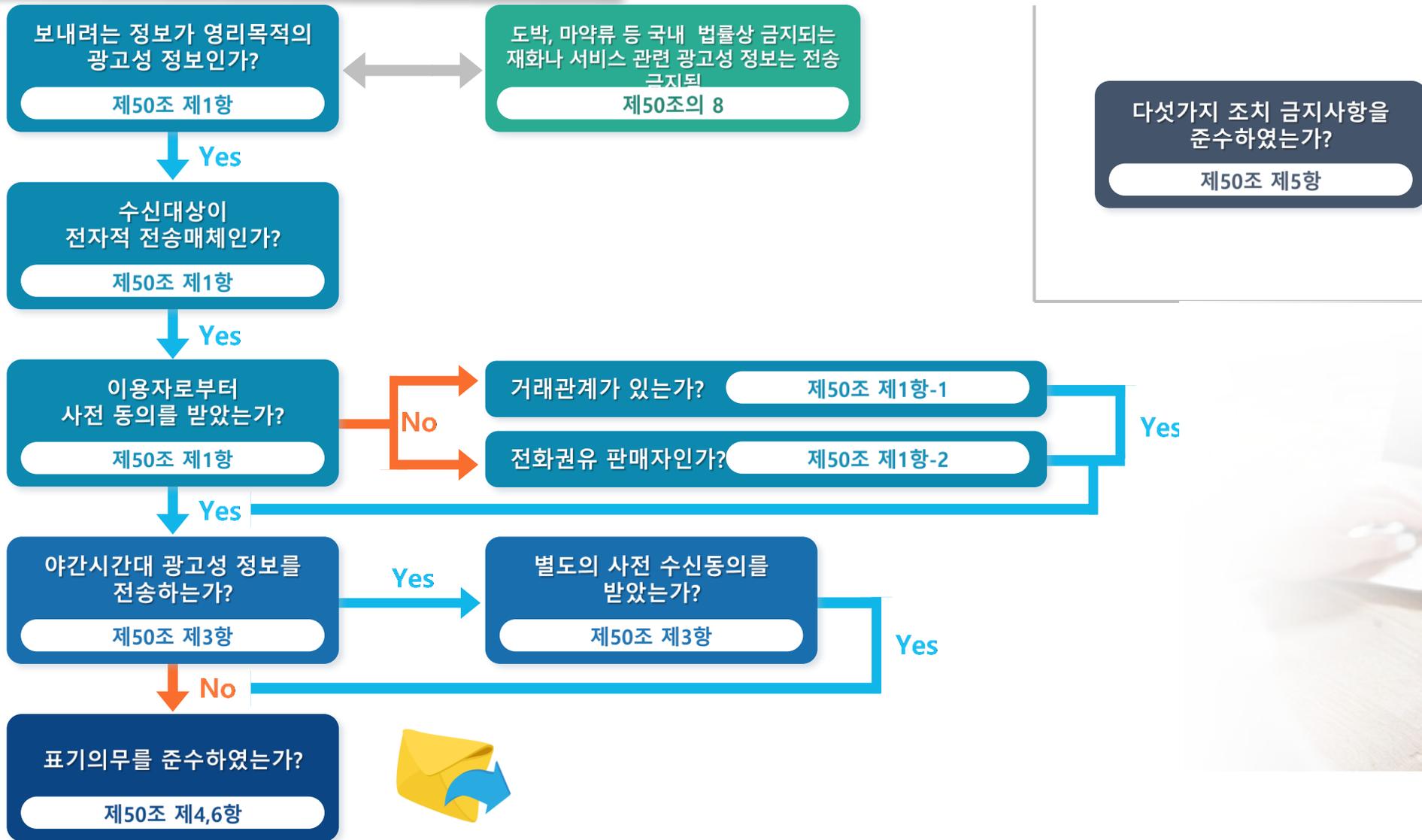


표기사항 의무



금지사항

2 광고 전송 방법 - 전송자 측면



2 광고 전송 방법 - 이용자 보호 측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뒤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는가?

제50조 제7항

이용자가 사전 동의 철회 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는가

제50조 제7항

이용자가 수신거부 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는가?

제50조 제2항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제50조 제8항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란?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01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2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



02

영업을 하는 자(영리법인 등)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03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인 경우 전송하는 해당 정보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며,

수익창출(영리취득)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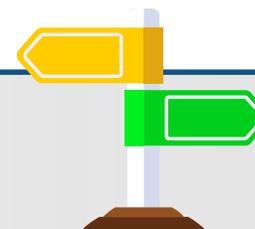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예외

판단 기준



광고성 정보의 예외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측의 입장 및 양자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01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로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자유롭게 정보를 전송하여도 됨

02



전송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생일기념,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움

03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 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됨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예외

원칙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다음 6가지에 해당할 경우



- 1 계약 및 거래 시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및 내용
- 2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3 수신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내용
- 4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 내용의 변경 내용
- 5 수신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내용
- 6 서비스의 보안 관련 내용 및 업데이트 내용 등의 정보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예외

원칙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유료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내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예외

원칙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기타

위에서 설명한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정보 전체를 예외로 볼 수 있음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정

조 항	주요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제50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외 1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예외 2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제5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의 관리·감독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시 광고전송 금지 	제50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시 ~ 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준수 	제50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 시 광고전송 금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원링 스팸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제50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제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제50조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1항 ~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7제1항, 제2항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위반 조항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제50조제1항 ~ 제4항, 제6항, 제8항 / 제50조의5 / 제50조의7제1항, 제2항	750	1,500	3,000
제50조제7항 / 제50조의4제4항	300	600	1,000

1 제50조 제1항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예 외

1호

- ▶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
- ▶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
- ▶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
- ▶ 거래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전송

2호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
- ▶ 상담원이 육성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육성을 녹음한 ARS는 해당 안됨)
- ▶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연락처를 생성한 경우에도 고지하여야 함)
- ▶ 전화 통화를 통해 재화 등 서비스에 대한 청약 및 계약을 체결



1 제50조 제1항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함



휴대전화 **설정의 '알림' 메뉴에서 조작하는 허용 설정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보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집·이용동의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사례 참고)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수신동의 받는 것으로
인정 가능한 사례



> 마케팅 활용 동의서 (선택사항)

본 동의문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DM 등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합니다. (선택사항으로 동의를 하시면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수신동의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동의 의사 표시

구분	동의내용	동의유무
신청인	위와 같은 마케팅 목적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 제50조 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3 제50조 제3항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의 사전
수신동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수신자의 수신시각을 기준으로 함)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야간광고

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

4 제50조 제4항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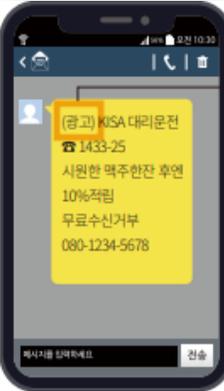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4 제50조 제4항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 부호 ·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는 해서는 안된다.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전자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자의 명칭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및 주소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모사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같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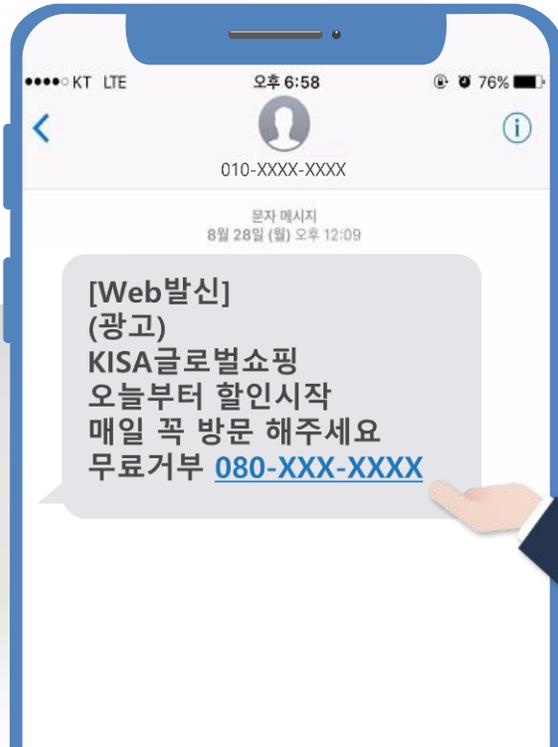
4 제50조 제4항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div data-bbox="410 494 1233 576"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div data-bbox="1803 476 2145 676" style="text-align: righ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p style="font-size: small;">안녕하세요? KISA 소령입니다. 본 음성메시지는 KISA 소령에서 안내하는 음성광고입니다. 본 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무료전화 080-1234-5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내용 안내]</p> </div> </div>
	<div data-bbox="410 965 1233 1048"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div data-bbox="1880 965 2119 1362" style="text-align: right;">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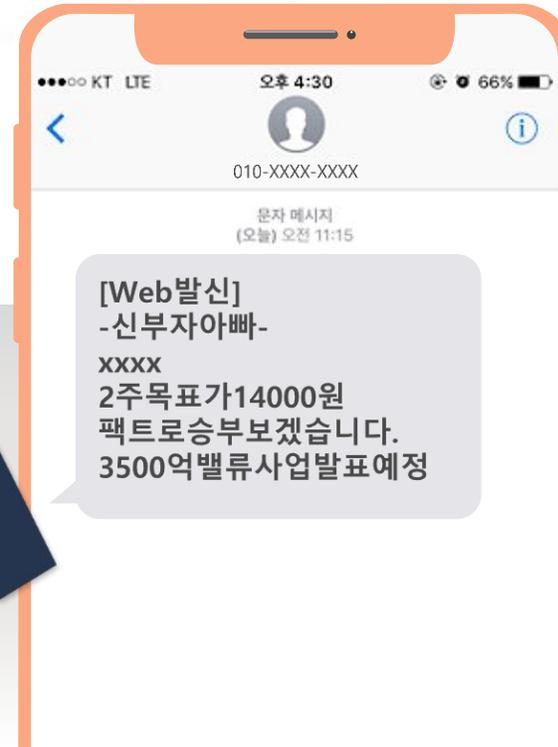
4 제50조 제4항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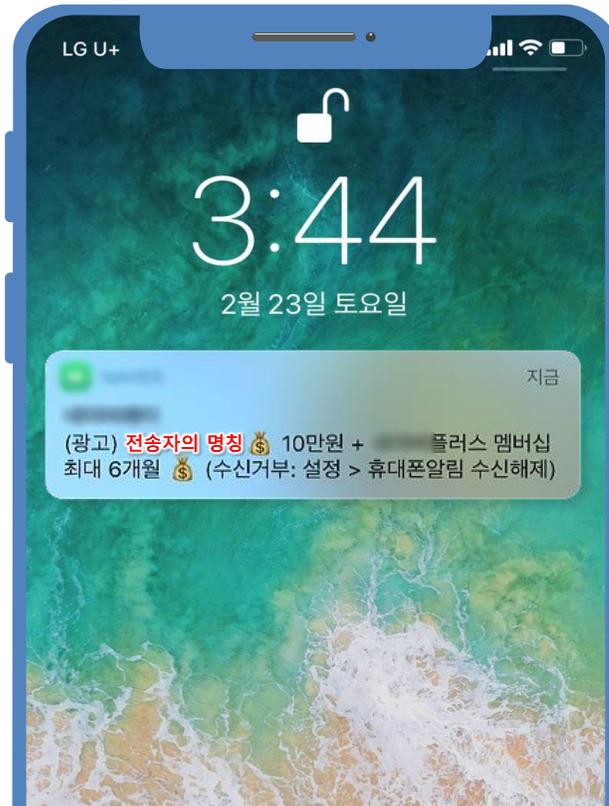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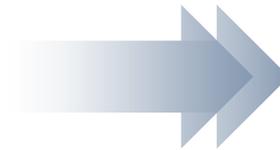


4 제50조 제4항

법령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GOOD



5 제50조 제5항

“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조치 금지사항(형사처벌) 전송제한 및 예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0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0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0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0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6 제50조 제6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 발생 금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전적 비용
수신자 부담 금지 및 안내

-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광고성 정보 내에 이를 명시하여 안내하여야 함
- ▶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 ” 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

6 제50조 제6항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 부호 ·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는 안된다.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안된다.
전자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자의 명칭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및 주소 ·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모사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6 제50조 제6항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div data-bbox="410 494 1233 575"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div data-bbox="1803 476 2145 67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안녕하세요? KISA 소령입니다. 본 음성메시지는 KISA 소령에서 안내하는 음성광고입니다. 본 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은 무료전화 080-1234-5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mall>[광고내용 안내]</small></p> </div>
	<div data-bbox="410 958 1233 1039"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div data-bbox="1880 968 2119 135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광고) KISA 대리문전 ☎ 1433-25 시원한 맥주한잔 후엔 10%적립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p> </div>

7 제50조 제7항

처리결과 통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01



전송자의 명칭

0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03



처리 결과

8 제50조 제8항

수신동의 여부 확인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시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9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형사처벌



타법에서 광고 행위자체를 처벌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별도로 본 규정도 적용



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위반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

감사합니다

